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1월 12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20년 11월 25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6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0년 11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산림과장)

가.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적극 감면
- 보훈 및 기타 법령 등에 의해 우리군 자연휴양림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 규정에 대한 정비를 추진
- 국가보훈처 등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과제 선정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 이행

나. 주요내용

조례 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조항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용섭)

○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기존 조례 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조항을 정비하는 목적이며

○ 조례안 주요내용은

기존 면제 대상자(군민, 강원도명예도민, 출향강원도민, 유료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와 할인 대상자(그린카드 소지한 사람, 강원도민, 휴양림과 제휴업체 이용객)에서 새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기존, 추가 감면대상자 모두 입장료 전액 감면입니다.

○ 추가되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의상자, 수급자 등의 입장료 감면은 불가피하다고 보이나

평창자연휴양림이 이번에 군 시설관리공단 운영 시설에 포함된 만큼 경제적 측면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부결(입장료 감면 기준에 보완 필요)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감면대상과 감면요율은 별표1의2와 같다.
별표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① <u>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1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u></p> <p>1. 면제 :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군민, 강원도명예도민, 출향강원도민, 숙박시설 또는 강당 등 유료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p> <p>2. 할인 : 그린카드 소지한 사람, 강원도민, 휴양림과 제휴업체 이용객</p> <p>② (생 략)</p> <p>1. ~ 2. (생 략)</p> <p>③ (생 략)</p>	<p>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①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감면대상과 감면요율은 별표1의2와 같다.</p> <p><u><삭 제></u></p> <p><u><삭 제></u></p> <p>②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별표1의2]

입장료의 감면기준

구분	감면대상	감면요율	비 고
입장료	평창군민 또는 강원도민, 강원도명예도민, 출향강원도민	요금의 100% 할인	※ 평창군민 - 평창군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 다자녀가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 구성원
	숙박시설 또는 강당 등 유료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각 실의 기준인원 적용)	요금의 100% 할인	
	그린카드 소지한 사람, 휴양림과 제휴업체 이용객	요금의 100% 할인	
	만6세 이하나 만65세 이상인 사람, 다자녀가정	요금의 100% 할인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국민 및 수행원, 외교사절단 등, 현장학습 등 교육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요금의 100% 할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요금의 100% 할인	
	「산림보호법」에 따른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요금의 100% 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요금의 100% 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요금의 100% 할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요금의 100% 할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요금의 100% 할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요금의 100% 할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요금의 100% 할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요금의 100% 할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포로 가족	요금의 100% 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요금의 100% 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요금의 100% 할인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인 중 투표참여확인증 소지자	요금의 100% 할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 2항에 해당하는 자	요금의 100% 할인		
기타 위와 유사한 사람으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 또는 평창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요금의 100% 할인		

비고

1. 입장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감면을 적용은 기간에 관계없이 [별표1]의 정상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